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3029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8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할 만큼 급박한 사안을 다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인 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함.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	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----- 2030년 12월 31일----------.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 략)	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